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34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19.9.25. ~ 10.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감면기한(2019. 12.1.)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7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칙 < 제7117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 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 ※ 재원부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사업인 서울페이로 시작했으나,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명칭이 변경(서울페이 → 제로페이)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제로페이는 2010년 후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금융기관 및 기업이 내놓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모두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적인 결제 시스템을 정부주도(중소벤처기업부)로 구축하는 정책임.
- ※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결제자에게 2019.12.31.까지 사용료의 100분 10을 감면하고자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을 개정하였음.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소년시설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27개 시설에서 총 6만건, 43억3천만원 규모의 결제 중 3만 6천건, 4억2천만원 수준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음.

※ 청소년시설에서 제로페이 사용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시(제286회 임시회, 2019.4.26.) 평생교육국은 약 8억 7천만원이 감면보존액으로 추계하였으나, 10월말 기준 감면보존에 사용된 금액이 4억 2천 3백만원에 불과한바, 세밀한 비용추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단위:천원)

구 분	사업수입 (8개월)	제로페이 이용 결제(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손실액 (10%할인)
금 액	28,954,673	8,686,402	868,640

※ 출처 : 제286회 임시회(2019.4.26.) 청소년시설 관련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

〈 청소년시설 제로페이 결제 실적 〉

(단위:천원)

구분	시설수	제로페이결제		제로페이할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청소년시설	27	60,055	4,330,650	36,005	423,941
강동청소년센터	1	1,708	102,324	1,553	11,240
강북청소년센터	1	1,865	205,715	1,569	21,724
광진청소년센터	1	1,579	74,139	1,086	9,100
구로청소년센터	1	1,306	86,828	1,249	9,691

구분	시설수	제로페이결제		제로페이할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천청소년센터	1	3,662	152,230	2,212	16,061
노원청소년센터	1	6,791	567,093	3,712	59,471
동대문청소년센터	1	2,511	110,424	1,775	12,025
마포청소년센터	1	5,636	381,170	2,985	41,315
망우청소년센터	1	3,868	254,840	1,640	25,374
목동청소년센터	1	2,118	146,623	1,918	17,140
문래청소년센터	1	7,377	545,080	3,188	56,710
보라매청소년센터	1	1,201	121,418	938	12,802
서대문청소년센터	1	4,389	182,312	2,206	17,745
서울청소년센터	1	690	152,346	204	12,070
성동청소년센터	1	4,230	534,472	2,611	29,628
성북청소년센터	1	1,202	48,048	613	5,196
수서청소년센터	1	2,915	229,478	2,376	24,424
은평청소년센터	1	2,727	194,650	2,319	19,070
중랑청소년센터	1	873	44,852	328	4,005
창동청소년센터	1	809	62,345	439	6,031
화곡청소년센터	1	924	27,693	507	2,861
청소년미디어센터	1	474	934	27	21
청소년직업체험센터	1	74	6,977	21	633
청소년드림센터	1	156	911	127	0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1	52	3,035	26	335
하이서울유스호스텔	1	281	61,495	273	6,765
서울유스호스텔	1	637	33,218	103	2,504

※ 출처 : 평생교육국

-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의 실적 또는 효과보다 총 '결제 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정 비율'과 '총 결제액 대비 제로페이 결제액'을 제로페이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는바, 감면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로페이의 성과를 소상공인 부담 경감보다,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대한 성과는 표시되고 있지 않음. 은행권 전자금융 결제수단별 결제액을 살펴보면, 제로페이는 0.01%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임.

〈 제로페이 추진성과 〉



출처 : 대한민국정부(정책위키:한눈에보는 정책, <http://www.korea.kr>)

〈 은행권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 〉

(단위:백만원)

결제수단	전자금융결제 수단별 결제액		
	합계	비율	월 평균
제로페이	14,946	0.01%	1,865
신용카드	65,635,898	55.10%	1,028,899
체크카드	52,274,700	43.89%	567,935
선불카드	264,265	0.22%	3,211
직불카드	816,022	0.69%	1,504
기타	106,126	0.09%	241
합계	119,112,027	100.00%	1,601,772

※ 출처 : 금융감독원, 조사기간 : 2018.12.20.~2019.8.16., 조사대상 : 18개(시중, 특수, 지방, 인터넷전문), 카드사가 개별법인인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신용·체크·선불카드 관련자료 제외

- 첫째, 평생교육국은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로페이 감면 중단시 시민의 불만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소년시설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에 있지 않은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점보다 이용객의 사용료 감면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둘째, 평생교육국은 조례 개정안을 예산심의가 있는 회기에 제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0년 감면손실 보전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청소년시설의 감면손실에 대해 보존할 수 없는바, 본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제로페이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감면자들에게는 ‘사용 경험을 통한 활성화’ 시책에서도 배제되는바, 평생교육국의 정책목표 달성 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넷째,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없는 것이 마땅하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득공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추후 활성화를 위해 재차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바, 제로페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수수료 제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1년 연장이 아닌 지속적·장기적 재원소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와 신용카드의 비교 〉

구분	제로페이	신용카드
결제방식	계좌이체	신용결제 후 정산
결제수수료	0.0%	0.8~2.3%
소득공제 혜택	40.0%	15.0%
제휴할인	없음	다수
외상거래	도입 논의 중	가능

○ 마지막으로, 제로페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자치사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가 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